

추가약정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전환용)

은행은 본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하

20 년 월 일

본 인 : (인)

주 소 :

채무자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등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추가약정서는 잔여 만기가 3년 이상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신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고객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 (금리상한 적용)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전환일인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동안 기준금리의 상승폭은 최대 ()%p·매 연간
()%p를 초과하지 않으며, 전환 후 ()년 경과 시점부터는 기준금리 상승분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제3조 (금리상한 적용에 따른 프리미엄) 제2조에 따른 금리상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환시점의 대출금리에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p가 가산되어 전환일인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동안 적용됩니다.

제4조 (기타사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대출이자율, 이자 및 지연배상금계산방법, 우대금리 및 적용기준 등의 사항은 20 년 월 일 작성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등에 따릅니다.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상기 추가 약정내용을 파악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 사본 1부를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음.

본 인 : (인)

